키움캐피탈㈜ 계좌운용규칙

펀드_ KB증권	시행일 : 2026.09.14.

1. 일반적인 매매 및 금융거래규칙

1) 매매 및 금융거래시간

매매시간	국내	[KRX] 08:30 ~ 20:00 (정규장, 애프터마켓, 시간외 거래 매수·매도 가능)
	미국	주간거래 10:00 ~ 18:00 (서머타임 09:00 ~ 17:00) (매수/매도 가능) 프리마켓 18:00 ~ 23:30 (서머타임 17:00 ~ 22:30) (매수/매도 가능) 정규시장 23:30 ~ 익일 06:00 (서머타임 22:30 ~ 익일05:00) (매수/매도 가능) 애프터거래 06:00 ~ 10:00 (서머타임 05:00 ~ 09:00) (매수/매도 가능) 단, 09:50 ~ 10:00(서머타임 08:50 ~ 09:00) 시스템 점검 시간 거래 불가
금융거래시간	대출(입금)	08:30 ~ 16:30까지 ※ 고객 부담 인지세 차감 후 원화로 입금
	이자(출금)	08:30, 16:00 (전액 출금 방식 : 이자출금액 부족 시 미인출)
	부분상환/중도해지(출금)	08:30 ~ 16:00 까지 (당사 홈페이지에서 상환신청)
	만기상환(해지)(출금)	08:30 ~ 16:00 (전액 출금 방식, 부족 시 상환불가)
	로스컷(출금)	16:00 (부분 출금 가능)

- 주문가능유형
  - 고객 매매주문은 지정가(국내,미국), 시장가(국내)만 가능합니다.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IOC, FOK 주문 불가)
  - 예약매매 등 특수주문 불가
- 반대매매 대상인 경우 정규시장 이전 매도 주문은 가능하며, 미체결 주문은 정규시장 개장 전 자동 취소됩니다.
- 각 거래소 및 거래 증권사 기준에 따라 매매가능시간 및 매매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거래소 매매시간 변경 시, 금융거래시간 (반대매매시간 포함)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능종목 및 유형

① 국내시장

거래가능종목	◆ KOSPI, KOSDAQ 상장종목 중 일반종목 ◆ 상장된 ETF 중 금융기관이 지정한 종목 ※ 거래가능 ETF 이외의 ETF종목은 매매, 담보인정, 입출고 및 HTS조회 불가함 (매수불가/보유불가종목 조회화면에서 조회 불가) ◆ 제3시장(KONEX)상장주식, 투·융자회사, 수익증권, 신주인수권, 채권, ELW, ETF(금융기관 지정종목 제외), ETN등 거래불가
거래유형	◆ 100% 현금거래에 한함 (신용거래/공매도/미수거래 불가)

매매 거래 금지 종목	매수	보유	보유금지시점	비고
관리종목	불가	불가	편입 후 재거래 즉시	
거래정지예정종목	불가	불가	거래정지 전일	
권리락종목(배당락 제외)	불가	불가	기준일 2일전(권리락 전일)	
감자/합병/분할/액면변경 등	불가	불가	거래정지 전일	
투자경고/위험/단기과열종목/투자주의환기	불가	-		일별조회
액면가 100% 이하 종목	불가	-		전일기준
시가총액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미만 종목	불가	-		전일기준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거래 종목	불가	-		일별조회
신규상장종목	불가	-		상장일에 한함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불가	-		일별조회
시세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불가	-		이유 없는 시세 급변만 해당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불가	-		

5일 평균거래량 1천주 미만 종목	불가	-		
정리매매종목	불가	불가	정리매매시작일	
5일 평균거래대금 5천만원 이하	불가	-		
주가 1천원 미만 종목	불가	-		전일기준
금융사 지정 (RMS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불가	-		지정 후 즉시

• 대출신청 시 보유불가 종목 보유: 대출이 불가하며, 보유불가 종목 매도 후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시 매수불가 종목 보유: 대출은 가능하나, 해당종목은 계좌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인출 시 매수불가 종목 보유: 계좌평가금액에서 해당종목의 평가금액은 제외됩니다.

② 미국시장

거래가능종목	◆ 매수가능종목 : 미국(NYSE, NASDAQ, AMEX) 거래소 상장종목(주식&ETF) 중 매수가능으로 지정된 종목 - S&P500, NASDAQ100 매수가능 (시스템(RMS)제한 종목 일부 제외) ◆ 매도가능종목 : 미국(NYSE, NASDAQ, AMEX) 거래소 상장종목(주식&ETF)
거래유형	◆ 100% 현금거래에 한함 (신용거래/공매도/미수거래 불가)
거래불가종목	◆ 거래가능종목 이외의 모든 종목

• 거래불가종목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신청 및 현금인출 시 계좌평가금액에서 해당종목의 평가금액은 제외됩니다.
• 감자/합병/액면분할/액면병합, 유무상증자 등 발생 시 계좌에 표시하지 않는 내용은 평가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증권계좌 담보비율산정

◆ 담보비율산정
- 산정식 = (장중 실시간)계좌평가금액 ÷ 대출원금 × 100
- 계좌평가금액 = 주식잔고평가금액(장중 실시간 보유주식수 × 현재가) + 예수금
※ 예수금: 거래소별 결제일 기준 예수금 (대출금 입금 시, 예수금에 포함됨)
※ 담보평가 및 담보비율은 KRX정규장 시세로 산정(정규장 외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등 시세 미반영)

◆ 기타사항
- 매수가능종목 외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신청 및 현금인출 시 계좌평가금액에서 해당종목의 평가금액은 제외 됨.
- 계좌평가금액 및 계좌담보비율은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 됨.(환산 시 기준환율은 증권사 기준을 따름.)
- 신주인수권증서 등 대출계좌 거래가능 종목이 아닌 종목은 평가제외 됨.

◆ (미국 거래소 상장종목) 감자/합병/액면분할/액면병합, 유무상증자 등 발생 시 담보비율
- 계좌평가금액 및 담보비율은 계좌에 표시되는 보유수량과 현재주가로만 평가됨. 따라서, 보유종목의 감자/합병/액면분할/액면병합, 유무상증자(이하 권리발생) 등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에서 해당 권리 발생에 따라 변동되는 보유수량과 주가를 계좌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권리는 담보비율 및 계좌평가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권리발생 등으로 보유수량 및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좌평가금액 및 담보비율이 급격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담보비율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 시 담보비율
-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원화로 대출실행되며, 계좌 내 환전은 거래증권사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 환율 변동 시 계좌평가금액 및 담보비율도 변동하며, 특히 환율 하락(예, 1USD 1,200원 → 1,000원) 시 담보비율도 하락합니다.

4) 기타거래제한

◆ 자동반대매매비율(로스컷비율) 및 한종목투자한도

자동반대매매비율(로스컷 비율)	한종목투자한도
130%	계좌평가금액의 최대 100% 이내

◆ 기타거래제한

동일종목매수제한	◆ 특정종목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본 상품 이용 전체 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을 해당종목 총 상장주식수의 3% 이하로 제한됨.
유동성제한	◆ 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 이상 매수금지. ※ 신규등록주의 경우 등록 후 4일까지는 해당일수만큼의 평균거래량 기준
금융사지정(시스템제한) 매수불가종목	◆ 시스템(RMS)에서 고객투자안전을 위해 매수금지로 설정한 종목 매수금지.
권리행사제한 등	◆ 국내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됨. ◆ 미국 : 거래증권사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청구, 유상증자 청약 등 권리행사가 가능. 다만, 권리 발생 등으로 보유주식 수량 및 주가(권리락 등) 변경에 따른 담보비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권리발생 등으로 보유수량 및 가격 변동으로 계좌평가금액 및 담보비율이 급격하게 변경되면 반대매매가 실행 될 수 있음. ◆ 대출계좌는 주식담보대출, 주식대여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질권설정 또는 계좌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불가)
정리매매종목	◆ 정리매매종목 지정 시 최저 호가(1원)로 반대매매가 실행됨.

※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해야 함.

5) 입고 및 출고

◆ 주식출고: 국내/해외주식 출고 불가능(자사/타사)
◆ 주식입고: 매수/보유불가(국내), 종목을 제외한 본인명의 계좌대체를 통한 주식입고만 가능(타사입고 및 현물입고 제한)
※ 해외주식(미국) 입/출고 불가
※ RMS의 제어를 받지 않고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 입고주식이 보유불가 종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종목에 대해 자동반대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입고 전에 반드시 HTS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보유불가 종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주인수권 증서 등 대출계좌 거래가능 종목이 아닌 종목이 입고되는 경우, 해당종목은 매매불가

6) 현금인출

◆ 현금인출비율 : **140%**
◆ 현금인출 가능금액: 대출원금의 140%(현금인출비율)를 초과한 현금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 예수금) – (대출원금 × 현금인출비율)
◆ 인출조건
– 인출 후 담보비율이 현금인출 담보비율을 초과해야 함.
– 매수불가종목(국내), 거래불가종목(미국)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 계좌평가금액에서 해당종목의 평가금액은 제외함
– 결제일 기준 예수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인출방법: 인출가능 담보비율 초과분에 한해, HTS 온라인 현금 이체 방식 (주식출고 불가)
※ 원화로만 인출 가능(외화이체출금 불가)
※ 과도한 현금 인출은 로스컷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계좌 내 인출 가능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식매도 등을 통하여 인출가능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반대매매 규칙

1) 자동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

자동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		자동반대매매 시기
공통 (국내, 미국)	국내거래소(미국거래소) 종료 후 담보비율 및 미국거래소(국내거래소) 종료 후 담보비율이 연속하여 로스컷비율 미만이고, 각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30분전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미만인 경우	⇒ 정규시장 개시 시점 이후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의이익상실) 후,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대출 해지사유 발생 후 금융기관에서 강제해지 실행 즉시
국내	보유주식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	⇒ 편입 전일 오전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 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권리락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보유주식 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합병/분할, 액면변경, 감자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전일) 오전동시호가부터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	⇒ 정리매매시작일

※ 매수동결 및 로스컷 적용기준: 담보비율 하락 시점의 해당 정규장 기준으로 적용

2) 로스컷 반대매매

<table>
<tr>
<td>로스컷
(반대매매)</td>
<td>
◆ 로스컷(반대매매)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거래소(미국거래소) 종료 후 담보비율 및 미국거래소(국내거래소) 종료 후 담보비율이 연속하여 로스컷비율 미만이고, 각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30분전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미만인 경우
⇒ 정규시장 개시 시점 이후에 대출 원리금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 반대매매 주문을 실행하며 체결이 되지 않을경우 계속하여 주문 실행
※ [KRX]정규장 종가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120% 이상 되더라도 장 마감 이후 [KRX]애프터마켓 매매, 이자출금 등의 사유로 담보비율이 1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익일 로스컷(반대매매)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의이익상실) 후,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대출 해지사유 발생 후 금융기관에서 강제해지를 실행하여 먼저 개시되는 정규시장부터 반대매매 실행
※ 제3자가 증권계좌에 (가)압류 조치를 한 경우, 고객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한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됨
◆ 로스컷(반대매매) 금액 및 수량
반대매매 금액: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
반대매매 수량 및 순서: 각 거래소별 아래 기준을 따름.
- 반대매매 수량 및 가격
<table>
<tr><th>거래소</th><th>국내</th><th>미국</th></tr>
<tr><td>반매매매 수량 및 기준가격</td><td>로스컷발생일(반대매매 실행일)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 계산</td><td>전일종가의 85%를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 계산</td></tr>
<tr><td>처분가격</td><td>오전 동시호가</td><td>시장가</td></tr>
</table>
- 반대매매 순서
<table>
<tr><th>거래소</th><th>공통(국내&미국)</th></tr>
<tr><td>처분순서</td><td>보유종목의 종목코드 순서에 따라 반대매매 실행
(보유금지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보유금지 종목이 최우선, 고객이 반대매매 주문 전에 매도주문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수량을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간주)</td></tr>
</table>
◆ 거래정지/하한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대매매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순위 종목이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 반대매매는 매매가능 시간 내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될 때까지 실시됩니다.
◆ 반대매매(로스컷/금융기관강제해지)가 실행된 계좌는 계약해지 시까지 매수가 제한되고, 대출원리금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계좌에 주식(현물)입고되는 경우,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추가반대매매가 실행되므로, 주식(현물)입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전 시 기준환율 및 환전순서 등은 거래증권사 기준을 따름
◆ 로스컷(반대매매)후 출금: 원금/이자 일괄청구방식, 부분출금 가능
※ 로스컷으로 대출약정 해지 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입금해 주셔야 하며, 손실금액 미입금시에는 입금일까지 연체이자율이 계속 적용됨
◆ 반대매매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자동매매시에는 오프라인 매매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td>
</tr>
<tr>
<td>로스컷
경고SMS</td>
<td>
◆ 실시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로스컷비율+3%, 로스컷비율+5% 도달 시 사전경고 SMS가 발송 됨
※ 장중 경고 SMS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SMS 발송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국내시장/미국시장 종료 후 : 로스컷 담보비율 미만인 고객 전체에게 발송
◆ 국내시장 [KRX]애프터마켓 종료 후 : 로스컷 담보비율 미만인 고객 전체에게 발송
◆ 정규시장 개장 30분 전 : 로스컷 반대매매 대상 고객 전체에게 발송
◆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 즉시 : 반대매매 실행 통지 SMS 발송
◆ 권리락 및 합병/분할, 액면변경, 감자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경고 SMS: 반대매매실시 전 발송 (1일 전, 2일 전)
◆ 기타사항
- SMS 등은 시장의 급격한 변동 및 야간 전송제한 시간인 경우 발송이 불가능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정상계좌를 대상으로 발송되며, 이미 로스컷 또는 금융기관강제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로스컷예고 SMS 등은 로스컷 반대매매 대상계좌에게만 발송되며, 금융기관 강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고객은 금융기관(여신기관 및 증권사)에 항상 최신의 연락처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락처 미갱신, 수신거부(스팸처리 등), SMS 미확인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발생 및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td>
</tr>
</table>

매수거래 정지	◆ 매수동결제한 : 장중 담보율이 로스컷비율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신규 매수 불가능. ⇒ 장중 담보율이 로스컷비율 이상인 경우, 매수 가능 ⇒ 국내 [KRX] 애프터마켓 시세 상승 시에도 동결 유지 ◆ 로스컷계좌제한 : 로스컷(반대매매) 실행 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미만인 경우 ⇒ 현금입금, 일부상환 등에 의하여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인 경우 매수가능 ◆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조치 종목 보유 시 ⇒ 해당 종목을 제외한 담보율이 로스컷비율 미만으로 하락 시 주식 매수가 제한됩니다. ⇒ 주식매수거래를 위해서는, 입금하여 담보율을 로스컷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해지 유예기간	◆ 로스컷(반대매매)이후, "대출해지 유예기간제도" 적용 로스컷발생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담보비율을 상승시키는 경우 계좌를 정상계좌로 부활시키는 "대출해지 유예기간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해지 유예기간 적용대상 및 방법 - 적용대상 :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로스컷 발생계좌(금융기관강제해지 계좌는 미적용) - 상환유예기간 : 반대매매 실행 후(D일) ~ D+5영업일 15:30 까지 - 계좌부활기준 : 대출해지 유예기간 내에 현금입금, 일부상환 등으로 담보비율을 로스컷비율 이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 ※ 대출해지(고객중도해지신청/만기해지/기한이익상실)"시에는 미적용함 ◆ 로스컷 상환(해지) - 대출해지 유예기간 내에 계좌를 부활시키지 않는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출원리금 상환은 원화로만 가능하므로 원화가 부족한 경우 외화를 환전하여야합니다. - 대출해지 유예기간 중 고객이 직접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대출 홈페이지 이용) - 대출해지 유예기간 중에도 해외주식 및 외화를 보유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계좌평가금액이 변동되며,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약정 및 스탁론 서비스약정 체결규칙

신규약정체결 (재약정포함)	◆ **대출약정 체결조건** NICE 신용평점 355점 이상 해당 고객 →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운용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자, 채무불이행/연체중인 고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 및 외국인은 약정 불가합니다. 민법상 성년 동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 한도 6억원 이내에서 대출신청하는 고객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최저 100만원 이상인 고객 증권계좌에 대해 온라인 (근)질권설정을 완료한 고객 (근)질권자에게 (근)질권설정 승낙 의뢰 또는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고객 증권계좌에 보유불가 종목이 없어야 하며 보유시 매도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권설정방식** - 고객이 당사 대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공동인증서 및 전자서명 사용)
	◆ **대출조건** (자세한 내용은 여신거래약정서 및 상품상세정보, 대출신청완료정보 참조) <u>대출금리 : 상품상세정보 및 대출신청완료 정보참조</u> 대출기간 : 3개월 / 12개월 (선택가능) (최초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연체이자율 : 약정이율+최대 3%, 법정최고금리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중도상환 가능) 대출한도 : 계좌평가금액의 **200%** 이내 ※ 고객별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 : 대출실행시 다음과 같이 대출한도설정금액별 인지세 부과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대출금에서 공제 후 입금되며, 해당인지세의 50%는 대출금융기관이 부담)

대출한도설정금액(추가대출 포함)	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대출한도 설정금액	◆ 최대 대출한도금액 내에서 고객이 직접 설정함. ☞ 개인별 주식매입자금대출 합계금액 6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계좌별 3억) ◆ 최대 대출한도설정금액 내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일부상환과 추가대출이 가능함. 대출한도설정금액 내 추가대출 가능금액 = (계좌평가금액 – 추가대출 전 대출잔액) × 대출한도(비율) – 추가대출 전 대출잔액 보유불가종목(국내), 거래불가종목(미국) 보유시 대출 불가 추가대출시 계좌평가금액은 매수불가종목을 제외하고 평가되므로 HTS에서 보여지는 담보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액이 대출한도설정금액 이하여야 함. ◆ 대출금 상환시에 최소금액(10,000원 이상)을 유지하셔야 대출한도가 유지되오니, 대출한도를 유지하고자 하실 경우 최소 대출금액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증액/감액	◆ 대출한도 설정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약정 체결조건 ① ~ ⑨항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증액가능금액 산정방식 = (계좌평가금액 – 대출잔액) × 대출한도(비율) – 증액 전 대출한도설정금액 ☞ 계좌평가금액 = 총 계좌평가금액 – 매수불가종목(국내), 거래불가종목(해외)의 평가금액 대출금리 : 최초 대출금리와 동일 (단, 만기 연장시 연장시점의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간 : 최초 대출 만기일자와 동일 기타조건 : 연체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한도는 신규대출 조건과 동일, 인지세 등 수수료금액을 계좌 내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해야 함 ※ 한도증액 시 고객별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설정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 감액 전 대출한도 설정금액 미만, 대출잔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도 변경 가능 ※ 추후 대출한도 설정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음
대출한도 내 추가대출	◆ 추가대출신청 : 스탁론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청 담보평가액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신규약정체결조건 충족 시) 추가대출가능금액 = (계좌평가금액 – 추가대출 전 대출잔액) * 대출가능비율 – 추가대출 전 대출잔액 ◆ 추가대출조건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액이 대출한도설정금액 이하 계좌 내 보유불가종목(국내) 미보유 ※단, 추가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매수금지종목(국내), 거래불가종목(미국)은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납입	◆ 이자 납입일 – 대출 개시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 이자납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자납입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증액 및 추가대출/일부상환/만기연장시 납입일변경되지 않습니다.) ◆ 이자 납입 방법 – 이자 납입일에 고객님의 증권계좌에서 자동 출금 – 증권계좌의 출금가능예수금이 이자금액 미만인 경우 미인출 ◆ 출금 방식 – 이자 출금 후 담보율이 고객님께서 설정한 로스컷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 이자 출금이 되지 않으며 연체처리 됩니다. (이자출금에 따른 로스컷 방지를 위해 담보비율이 이자출금 후 로스컷비율 이상일 때 이자출금가능)
일부상환	◆ 신청방법: 스탁론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청 ◆ 일부상환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부상환 가능 계좌 내 일부상환금액(대출원금 및 이자금액)을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 일부상환 후 담보율 상승

연장	◆ 연장신청 : 최초 대출신청 시 자동만기연장 신청서 작성 ◆ 연장조건 : 하기 연장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 가능 신규약정체결조건 ① ~ ⑨항 해당 고객 최초 대출신청 시 자동만기연장 신청 고객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인 고객 증권계좌 내에 만기 해당월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 ◆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만기일 처리 (만기일에 따라 이자납입일 변경될 수 있음) ◆ 당월이자 전액출금 방식 : 인출금액 부족시 연장불가 ◆ 연장 시 대출금리는 회사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 유의사항 ※ 연장조건 미충족 시, 자동반대매매 실시 후 강제 해지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 강제 해지가 실행되는 경우, 계약해지 시까지 증권계좌의 매매가 제한되고, 상환이 완료되기 전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반대매매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시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해지	◆ 해지 사유 약정만기일 도래 : 연장조건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주식매입자금용도 사용 준수 로스컷비율 미만으로 반대매매 실행 후 5영업일 15:30까지 담보비율을 로스컷비율 이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대출해지/원금상환과 동시에 스탁론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해지 ◆ 해지된 증권계좌로 재대출 희망할 경우, 질권재설정 후 신청 ◆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핀드가 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핀드는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
금융거래 유의사항	◆ 이자납부 및 상환 등 모든 계좌 출금은 원화로 출금되므로 필요금액만큼 원화로 보유해야 합니다. 원화가 부족한 경우 외화를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강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만기미상환, 대출해지 유예기간 종료 등)하는 경우 강제환전 처리가 되며, 환전 금액은 환전수수료, 세금 등을 고려합니다. ◆ 이자납부 및 상환 등을 위한 환전 시 기준환율 등은 거래 증권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전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적용환율 변동 위험이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예, 15시 30분 이전 환전 시 당일 기준환율 적용, 이후 환전 시 익일 기준환율 적용)
기타사항	◆ 연락처제공의무 - 고객은 스탁론 계좌운용을 위한 중요정보(담보비율, 반대매매 안내, 이자연체, 만기연장, 변경사항 안내 등)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항상 최신의 연락처 정보(휴대폰번호 필수)를 금융기관(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에 제공하여야 함 약관 등의 변경 및 대출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을 시, 고객이 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에 최종으로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통한 문자메세지(SMS, MMS, LMS 등)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됨 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이자연체, 반대매매발생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로 연락처 변경 요망 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에 담보율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출, 연장, 주식 신규매수, 인출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출이용제한 -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하여, 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는 스탁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대출/연장/주식신규매수/인출거래제한) -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스탁론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반대매매 및 계좌강제해지 등의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음. [스탁론 이용목적 위반 예시] ① 타인명의를 이용한 계좌운용 ② 복수계좌를 이용한 대규모 담보대출 ③ 기타 시세조정을 위한 대출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 **위 계좌운용규칙은 관련법규 및 시장상황, 해외거래소 및 거래증권사 운영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